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04991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피항소인	1.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3.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4.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5.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항소인	1. [redacted]국
	2. [redacted]시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4가합59391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10.
판 결 선 고	2017. 4. 1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redacted]국은 [redacted]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13979호로 공탁한 705,934,733원 중, 107,366,499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67,104,062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60,393,656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3,552,031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3,552,031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redacted]시는 [redacted]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3977호로 공탁한 422,612,820원 중 64,275,714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40,172,321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6,155,089원은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0,086,161원은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0,086,161원은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redacted]씨와 [redacted]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주식회사 [redacted]씨(이하 '[redacted]씨'라 한다)는 2008. 6. 24. [redacted]신탁 주식회사(이하 '[redacted]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redacted]씨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어 [redacted]시 상당구 문화동 50-2 대 567.5㎡외 54 필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를 [redacted]신탁에 신탁하고, [redacted]신탁은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과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6. 26.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redacted]신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특약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최초 수익자)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갑(동영디엔씨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그러나 을([redacted]신탁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14조 (수익권) ①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또는 해지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제16조 (수익권의 양도, 승계, 질권 설정) ① 수익자는 을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 설정할 수 없다. ②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19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 비용일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② 을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갑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전 각 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동 대지급금의 조달 금리를 적용할 이자는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redacted]씨와 대한투자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추가하여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신탁재산의 인도 및 계약의 효력)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후 즉시 본 건 토지에 대하여 당사를 을로 한(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의 효력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부터 발생한다.
제7조(업무분담 및 신의성실)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
제8조 (질권자) 본 계약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하여 질권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제 비용의 지급순서)
① 자금 및 분양수입금에 대한 관리 및 집행은 을의 단독계좌로 관리하고 집행한다.
② 자금의 집행 및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을이 집행 및 정산하되, 을은 후순위자금의 집행 및 정산이 긴급할 경우 선순위 자금의 집행 및 정산을 보류하거나 집행 및 정산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을의 대지급금
2. 을이 본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고유계정차입금 이자
3. 설계비, 감리비 및 분양광고비 등 사업진행경비(국공유지 등 매입비용 포함)
4. 공사비(총공사비의 80%)
5. 을의 신탁회사의 고유계정 차입금 상환
6. 민원처리 및 사업진행관련 기타 신탁사무처리비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7. 잔여 공사비
8. 질권 순위에 따른 질권 배당
9. 신탁수익의 지급

제12조(제세공과금의 납부)

①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등록세, 법인세 등 사업종료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금)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갑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전항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을의 청구에 따라 갑 및 수익자가 납부하거나 갑의 신탁재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제25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 기간 종료전이라도 을은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기간을 정하여 갑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최고(2회) 한 후 최고 기간(발송일로부터 회당 14일) 만료 시까지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처분할 수 있다.

1. 특약사항 제23조에 해당될 경우
2. 신탁계약 위반시
3. 을을 사업주체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4.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② 을이 본 계약상의 갑의 주소지로 서면통지하면 이는 갑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갑은 신탁부동산 처분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을에게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8조(처분대금 정산)

① 을은 처분대금 등에서 환기절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우선으로 공제한 후 특약사항 제11조에 의하여 정산한다.

1. 비용: 을의 투입금 일체와 투입금에 대하여 정산 시까지 을의 내규에 의한 이자포함
2. 보수: 본 계약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처분 시까지의 기수납 보수와 처분대금의 0.8%에 해당하는 금액
3. 채무: 을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조건부 공사도급계약, 조건부 감리계약, 조건부 설계계약 등)으로 발생된 채무 및 을이 사업주체로서 부담한(할) 각종 비용

다. [redacted]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14개 저축은행들(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은 2008. 6. 27.경 [redacted]씨에게 위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redacted]씨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공동4순위 질권을 설정 받았는데, 그 세부내역은 별지 1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공탁금 안분내역' 중 질권자 및 질권설정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위 저축은행들 중 주식회사 [redacted]축은행, 주식회사 [redacted]축은행, 주식회사 [redacted]축은행, 주식회사 [redacted]축은행,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라. [redacted]씨의 국세,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

1) 피고 [redacted]시는 2009. 2. 23. [redacted]씨에 대한 주민세, 취득세 등 25건 합계 66,0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redacted]씨가 [redacted]신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고, 2014. 6. 24. 재산세 19건 합계 422,612,820원 상당의 조세채권(별지2. [redacted]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의 지방세 항목 중 연번 3 내지 7, 10 내지 23번)의 체납처분으로 [redacted]씨가 [redacted]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2) 피고 [redacted]국(소관: 동[redacted]세무서)은 2011. 4. 7. [redacted]씨에 대한 2008년 1월분 부가가치세 804,27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1번), 2008년 7월분 부가가치세 390,38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2번) 및 2010년 6월분 종합부동산세 141,996,91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3번, 다만 압류 당시의 가산금은 8,791,530원이었다) 합계 143,191,560원의 체납처분으로 [redacted]씨가 [redacted]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위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3)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redacted]씨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은 별지 2 '동[redacted]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기재와 같다.

마. [redacted]신탁의 공탁

1) [redacted]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자 2014. 4.경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처분하고 4순위 우선수익권의 질권자들인 이 사건 저축은행들[1]에게 그 처분대금을 배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redacted]국은 [redacted]씨의 2014. 6. 27. 기준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705,934,733원(별지 2 '동[redacted]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국세 항목 중 연번 3 내지 6번)을, 피고 [redacted]시는 [redacted]씨의 위 라.의 1)항 중 재산세 체납액 422,612,820원을 각 세법상 당해세 징수 우선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정산시 우선수익자나 그 질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redacted]신탁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①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13979호로 705,934,733원을 이 사건 저축은행들 또는 피고 [redacted]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② 같은 날 같은 법원 2014금제13977호로 422,612,820원을 이 사건 저축은행들 또는 피고 [redacted]시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가 1 내지 8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공탁 당시 주식회사 [redacted]은행, 주식회사 [redacted]은행,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은 질권부 채권을 [redacted]관리공사에 양도하여 피공탁자가 [redacted]공사로 되어 있으나, 이후 위 저축은행들은 [redacted]공사로부터 질권부 채권을 다시 양수하여 [redacted]공사의 피공탁자 지위는 위 저축은행들에 이전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redacted]국은,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redacted]신탁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처럼 피공탁자가 상대적 불확지인 경우 피공탁자 중 일부인 원고들로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 [redacted]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redacted]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이를 먼저 압류채권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상대적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각 공탁은 유효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채권자가 우선순위로 채권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redacted]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 제2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은 질권자들이 동영디엔씨에 대하여 가지는 피담보채권에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은 질권자들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동영디앤씨의 [redacted]신탁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다. 따라서 피고들의 각 압류처분은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당해세 등의 채권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제1공탁의 공탁금 중 301,968,279원 및 이 사건 제2공탁의 공탁금 중 180,775,447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그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원고들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특약 제28조 제1항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등에서 비용, 보수, 채무 등 위 조항에서 정한 금액을 최우선 공제한 후 이 사건 특약 제11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2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은 1순위, 질권 순위에 따른 질권 배당은 8순위, 신탁수익의 지급은 9순위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서 비용 등을 최우선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 갖는 질권의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의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 및 그 정산순위가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질권보다 선순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redacted]씨의 신탁수익금 채권보다 선순위인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질권부 채권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서 비용 등을 최우선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redacted]씨의 [redacted]신탁에 대한 신탁수익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redacted]씨의 신탁수익금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들의 압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압류에 기하여 [redacted]신탁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탁금은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게 각 질권설정액에 따라 안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하여 지급되어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1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각 공탁금 안분내역' 중 제1, 2공탁금 안분내역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저축은행들 중 일부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위 각 안분내역의 원고별 기재 금액에 관하여 정당한 출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다른 피공탁자들인 피고들이 자신들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해세 우선 지급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redacted]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토지세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당해세로서 그 성립 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원고들의 질권에 우선하므로, 대한투자신탁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서 피고들의 조세채권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신탁법 제2조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에 대한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나) 2008. 6. 24.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투자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redacted]국은 2011. 4. 7. [redacted]씨에 대한 2010. 6.분 종합부동산세 141,996,910원을 포함한 합계 143,191,560원의 체납처분으로 [redacted]씨의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피고 [redacted]시는 2014. 6. 24. 재산세 합계 422,612,820원의 체납처분으로 동영디엔씨의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별지 2 '[redacted]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redacted]씨이므로, 위 조세채권이 모두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그 조세채권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나.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우선 지급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를 질권 순위에 따른 질권 배당에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는 수탁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위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위탁자인 [redacted]씨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고들의 질권보다 우선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은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관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으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조세는 [redacted]씨의 부담으로 하고 대한투자신탁이 그 비용을 대지급한 경우 이를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redacted]씨에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특약 제7조는 신탁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업무는 [redacted]씨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신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탁계약 체결 전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발생한 세금 등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는 이 사건 당해세와 같이 위탁자인 [redacted]씨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redacted]신탁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을 환가하여 그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제1순위로 충당되는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에 위탁자인 [redacted]씨에 부과된 당해세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직접 [redacted]신탁에 대하여 [redacted]씨에 대한 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1) 이 사건 특약의 당사자는 [redacted]씨와 [redacted]신탁이다. [redacted]신탁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등에서 조세, 이자 등을 정산한 신탁수익금을 [redacted]씨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그 조세채권 상당액을 특약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과 계약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를 피고들에게 수탁자인 [redacted]신탁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렵다.

(2) 또한 설령 이 사건 특약이 피고들이 [redacted]신탁에 대하여 직접 조세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효력이 없다. 즉, 피고들이 [redacted]신탁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금액은 [redacted]씨에 대한 조세채권이다. 그런데 조세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법(私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하여 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70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위 조세채권의 원래 채무자인 [redacted]씨 외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redacted]신탁까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 [redacted]시의 기타 주장에 관하여

1) 우선순위 조세채권

가) 주장

피고 [redacted]시의 66,097,680원 상당의 취득세, 주민세 등의 조세채권은 당해세는 아니지만, 그 법정기일이 원고들의 질권 설정일 이전이므로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질권에 우선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redacted]시의 [redacted]씨에 대한 일부 조세채권(별지 2 '[redacted]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지방세 항목 중 연번 24 내지 34번)은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일보다 앞선다.

그러나 갑 4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redacted]시가 [redacted]씨의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한 것은 같은 별지 지방세 항목 중 연번 3 내지 7, 10 내지 23 기재 합계 422,612,820원의 재산세의 체납처분으로만 한 것이고, [redacted]씨에 대한 66,0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의 체납처분으로는 2009. 2. 23.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을 뿐인 사실, 이 사건 제2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도 피고 [redacted]시가 위 66,0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신탁수익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채권을 압류하였다거나 그 분배를 요구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redacted]신탁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위 재산세 체납액 상당액인 422,612,820원만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redacted]시가 위 422,612,820원의 재산세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이 위 66,097,680원의 조세채권에까지 확장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참조), 피고 [redacted]시는 위 66,097,680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들의 질권 설정일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2공탁금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2) 채권자대위

피고 [redacted]시는, [redacted]씨가 이 사건 특약에 의해 [redacted]신탁에 대하여 갖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상당 금원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edacted]씨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대한투자신탁에 대하여 동영디엔씨에 부과된 조세채무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신탁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대한투자신탁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충주시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재판장 판사 윤성근

판사 정수진

판사 김수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별지1)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공탁금 안분내역

연번	질권자	질권설정액(원)(㉮)	제1공탁금 안분내역2)(원)	제2공탁금 안분내역3)(원)	비고
1	㈜심[redacted]은행	10,400,000,000	107,366,499	64,275,714	원고1
2	㈜피[redacted]은행	3,250,000,000	33,552,031	20,086,161	원고5
3	㈜[redacted]은행4)	5,850,000,000	60,393,656	36,155,089	
4	㈜[redacted]은행	3,250,000,000	33,552,031	20,086,161	원고4
5	㈜[redacted]은행	5,850,000,000	60,393,656	36,155,089	원고3
6	㈜[redacted]은행	1,560,000,000	16,104,975	9,641,357	
7	㈜[redacted]은행	5,200,000,000	53,683,250	32,137,857	
8	㈜신[redacted]은행	6,500,000,000	67,104,062	40,172,321	원고2
9	㈜[redacted]은행5)	1,300,000,000	13,420,812	8,034,464	
10	㈜[redacted]은행6)	8,320,000,000	85,893,199	51,420,571	
11	㈜[redacted]은행	2,600,000,000	26,841,625	16,068,929	
12	㈜[redacted]은행7)	1,950,000,000	20,131,219	12,051,697	
13	㈜[redacted]은행8)	1,950,000,000	20,131,219	12,051,696	
14	㈜[redacted]은행	10,400,000,000	107,366,499	64,275,714	
합계		68,380,000,000(㉯)	705,934,733	422,612,820	

2) 계산식=이 사건 제1공탁금 705,934,733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단, 합계 금액을 맞추기 위해 원 미만 금액이 더 많은 연번 3, 5, 6, 7, 11, 12, 13은 원 미만을 올림함)
3) 계산식=이 사건 제2공탁금 422,612,820원×㉮/㉯ (단, 합계 금액을 맞추기 위해 원 미만 금액이 더 많은 연번 2, 4, 11, 12은 원 미만을 올림함)
4)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redacted]은행
5)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redacted]은행
6)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redacted]축은행
7)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redacted]은행
8)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redacted]은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별지2)

[redacted]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1. 국세

순번	세목	귀속연도	법정기일	체납세액(원)	본세(원)		가산금(원)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1	부가가치세	2008년 1월분	2010.2.1.	804,270	780,850	0	23,420
2	부가가치세	2008년 7월분	2010.2.1.	390,380	379,010	0	11,370
3	종합부동산세	2010년 6월분	2010.11.16.	233,109,130	111,004,490	22,200,890	99,903,750
4	종합부동산세	2011년 6월분	2011.11.16.	217,124,530	111,004,490	22,200,890	83,919,150
5	종합부동산세	2012년 6월분	2012.11.16.	200,397,290	111,480,751	22,296,150	66,620,390
6	종합부동산세	2013년 6월분	2013.11.16.	182,371,550	113,246,220	22,649,240	46,476,090
합계				834,197,150	447,895,811	89,347,170	296,954,17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2. 지방세

연번	세목명	과세이유물건	부관액(본세)	가산금계	합계	법정기일
1	구)재산세(건축물)	[redacted]	390,520	11,700	402,220	2008-07-10
2	구)재산세(건축물)		6,428,810	655,630	7,084,440	2008-07-10
3	구)재산세(건축물)		403,170	12,080	415,250	2009-07-10
4	구)재산세(건축물)		5,560,570	3,769,150	9,329,720	2009-07-10
5	구)재산세(건축물)		403,170	12,080	415,250	2010-07-10
6	구)재산세(건축물)		4,060,060	2,167,180	6,227,240	2010-07-10
7	구)재산세(건축물)		5,656,510	3,019,800	8,676,310	2010-07-10
8	구)재산세(토지)		36,085,130	2,814,540	38,899,670	2008-09-10
9	구)재산세(토지)		303,000	183,330	486,330	2008-09-10
10	구)재산세(토지)		32,572,880	15,048,490	47,621,370	2009-09-10
11	구)재산세(토지)		64,024,230	21,895,990	85,920,220	2010-09-10
12	재산세(건축물)		413,920	115,720	529,640	2011-07-10
13	재산세(건축물)		4,186,660	1,532,020	5,718,680	2011-07-10
14	재산세(건축물)		5,840,370	2,136,880	7,977,250	2011-07-10
15	재산세(건축물)		405,780	73,700	479,480	2012-07-10
16	재산세(건축물)		4,211,390	985,170	5,196,560	2012-07-10
17	재산세(건축물)		5,871,140	1,373,420	7,244,560	2012-07-10
18	재산세(건축물)		380,000	11,380	391,380	2013-07-10
19	재산세(건축물)		4,018,710	343,640	4,362,350	2013-07-10
20	재산세(건축물)		5,725,330	515,250	6,240,580	2013-07-10
21	재산세(토지)		64,024,230	11,908,360	75,932,590	2011-09-10
22	재산세(토지)		65,173,520	14,468,310	79,641,830	2012-09-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23	재산세(토지)	[redacted]	65,940,540	4,352,020	70,292,560	2013-09-10
소계1			382,079,640	87,405,840	469,485,480	
24	주민세(특별징수)		93,430	2,800	96,230	2008-01-10
25	면허세(일반)		36,000	1,080	37,080	2008-01-10
26	구)취득세(부동산)		9,728,570	1,565,410	11,293,980	2008-01-10
27	구)취득세(부동산)		1,014,230	694,020	1,708,250	2008-01-10
28	구)취득세(부동산)		683,990	468,110	1,152,100	2008-01-10
29	구)취득세(부동산)		310,790	9,310	320,100	2008-01-10
30	구)취득세(부동산)		4,240,270	2,902,200	7,142,470	2008-01-10
31	주민세(특별징수)	2007년10월귀속분([redacted]씨):근로소득	93,430	2,800	96,230	2008-02-10
32	주민세(특별징수)	2007년11월귀속분([redacted]씨):근로소득	93,430	2,800	96,230	2008-03-10
33	주민세(특별징수)	2007년12월귀속분([redacted]씨):근로소득	80,440	2,410	82,850	2008-04-10
34	주민세(특별징수)	2007년12월귀속분([redacted]씨):사업소득	33,000	990	33,990	2008-04-10
소계2			16,407,580	5,651,930	22,059,510	
35	구)재산세(건축물)	[redacted]	6,890	190	7,080	2008-07-10
36	구)재산세(건축물)		29,890	860	30,750	2008-07-10
37	주민세(특별징수)	2008년03월귀속분([redacted]씨):근로소득	52,170	1,560	53,730	2008-08-10
38	주민세(법인균등)	2008년법인균등할([redacted]씨)	62,500	1,870	64,370	2008-08-10
39	주민세(특별징수)	2008년04월귀속분([redacted]씨):근로소득	54,040	1,620	55,660	2008-09-10
40	주민세(특별징수)	2008년05월귀속분([redacted]씨):근로소득	54,040	1,620	55,660	2008-11-10
41	주민세(특별징수)	2008년06월귀속분([redacted]씨):근로소득	54,040	1,620	55,660	2008-12-10
42	주민세(특별징수)	2008년07월귀속분([redacted]씨):근로소득	54,040	1,620	55,660	2009-01-10
43	면허세(일반)	도로점용(공사용비계설치)	18,000	540	18,540	2009-01-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44	면허세(일반)	[redacted]	36,000	1,080	37,080	2009-01-10
45	주민세(특별징수)	:근로소득	54,040	1,620	55,660	2009-02-10
46	주민세(특별징수)	:근로소득	41,470	1,240	42,710	2009-04-10
47	주민세(특별징수)	:근로소득	31,870	950	32,820	2009-04-10
48	주민세(특별징수)	:근로소득	41,470	1,240	42,710	2009-05-10
49	주민세(특별징수)	:근로소득	30,850	920	31,770	2009-06-10
50	구)재산세(건축물)		7,250	200	7,450	2009-07-10
51	구)재산세(건축물)		30,940	910	31,850	2009-07-10
소계3			659,500	19,660	679,160	
합계			399,146,720	93,077,430	492,224,150	